

2020년도 자원봉사수요처 인정 및 시간인정 의결결과

■ **적용일자** : 2020. 7. 1.(수)

■ **적용사유** : 중앙자원봉사수요처심의위원회 및 대구광역시자원봉사수요
심의위원회 의결

연번	주요내용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건 1)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인정 여부 - 안건 2) 어린이집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 - 안건 3) 사회적 협동조합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 - 안건 4) 자원봉사 실비 지급 논의 - 안건 5) 작은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수요처의 등록 가능 여부 - 안건 6) 신생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 기준 추가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건 1) 수요처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의 반려 - 안건 2) 활동 재료비를 받는 활동의 실적 인정 여부

■ 안건1.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인정 여부

○ 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유지

- 노인 관련 기관(요양원, 병원,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등)의 경우,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, 단체,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

-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하였더라도,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
- 세부 사례 발생 시, 매뉴얼 및 가이드를 제작하여 지원 예정

■ 안건2. 어린이집의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

- 어린이집의 수요처 등록 기준 완화
 -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, 자원봉사의 가치나 의미를 전달 가능한 시설이며,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(수익을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금지)
 -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인정

■ 안건3. 사회적 협동조합 수요처 등록 기준 논의

-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,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므로 자원봉사 수요처 인정 가능
 -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(협동조합기본법 참고)

구분	일반 협동조합	사회적 협동조합
법인격	(영리)법인	비영리법인
설립	시도지사 신고	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
사업	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(금융 및 보험업 제외)	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· 지역사회 재생, 주민권익증진 등 · 취약계층 사회서비스, 일자리 제공 · 국가, 지자체 위탁사업 · 그 밖의 공익 증진사업 (금융 및 보험업 제외)
법정적립금	잉여금의 10/100이상	잉여금의 30/100이상
배당	배당가능 (이용실적에 따른 배당)	배당금지
청산	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	비영리 법인 및 국고 등에 귀속

- 2021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지침(행정안전부)에 해당 내용 추가 예정

■ 안건4. 자원봉사 실비 지급 논의

-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가능
 -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의 경우, 식사비 및 교통비는 현물로 지급함. 단, 현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식사비는 8,000원 이내, 교통비는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여 지급
- 대구의 경우, 교통비 5,000원, 4시간 이상 활동시 식비 8,000원 인정

■ 안건5. 작은 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·감독하는 수요처의 등록 가능 여부

- 자원봉사활동 책임 주체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 사례 조사 및 분석 후 재논의(2차 수요처 심의 위원회 이관)
- 작은 도서관 등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수요처에 대한 17개 광역시도의 현장 사례 조사 실시(6월 중)

■ 안건6. 신생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 기준 추가

- 기관 설립 3개월 이내의 법인 및 비영리 단체는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불가
- 단,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기관도 자원봉사센터 판단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두어 관리 할 수 있음

■ 기타안건1. 수요처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의 반려의 건

- 공무원 또는 선생님 등 정해진 수요처 관리자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관리자에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

-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배포 예정(6월)인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영상 및 화상을 통한 수요처 관리자 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■ 기타안건2. 활동 재료비를 받는 활동의 실적 인정 여부

-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고 진행하는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
-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적용 할 필요는 없으며, NEIS에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청소년에게 공지 후 활동